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132
----------	------

제출년월일 : 2014.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제5조)

나.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6.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 특별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유비쿼터스도시 전담부서 및 관련 부서, 관계기관(소방

안전본부, 경찰청, 교육청) 등의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운영사업 포함) 시행자
3. 도시계획 또는 유비쿼터스도시기술(정보통신, 정보시스템, 기타) 전문가
4. 유비쿼터스도시건설(운영 포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유비쿼터스도시에 관한 특별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전자정부사업관리자
 2. 해당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감리하는 감리시행자
 3. 그 밖에 특별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수회에 걸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4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유비쿼터스도시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운영)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취사항

관련법령	<p>□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p> <p>○ 제24조(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u>로 정한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참석 수당 연 5,000천원
소요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기획관리실 U-정보통신담당관 박상신